

의안번호	제427호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

발의자	김정일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10월 4일

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(김정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0월 4일
발 의 자 : 김정일, 이상정, 박봉순,
안치영, 안지윤, 조성태,
이옥규

1. 제안이유

-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,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정의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·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안 제8조)
- 관련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규정 : 붙임
- 나. 비용추계 : 붙임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 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경계선지능인”이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.
2. “경계선지능인 지원”이란 진단, 치료, 돌봄, 교육 및 취업 등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
2.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
3.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보급
4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5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자원 마련 및 조달 방법
6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, 치료, 돌봄, 교육 및 취업 지원
2.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보급
3.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
4.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·연구
5.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
6.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7.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운영의 위탁)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, 평생교육기관, 직업훈련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.

가. 지적장애인: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

나. 자폐성장애인: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·신체표현·자기조절·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
다.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□ 장애인복지법

제2조(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) 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9. 6. 4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3. 3., 2010. 3. 19., 2019. 6. 4.>

[제목개정 2019. 6. 4.]

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2. 9. 6.>

장애인의 장애 정도(제2조 관련)

6. 지적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)

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·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도내 경계선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
-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소요경비
-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소요경비

3. 관련조문

- 안 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)
- 안 제6조(실태조사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 : 2024년~2028년 (5년간)
- 예산 확보 상황 및 구체적 시행 가능한 사업에 한해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 : 100,000천원

-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
 - 50,000천원 × 1식 = 50,000천원
-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
 - 50,000천원 × 1식 = 5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출		100,000					100,000
충청북도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		50,000					50,000
충청북도 경계선 지능인 기본계획 수립		50,000					50,000
재원 조달		100,000					1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100,000					100,000
	지방세	100,000					10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·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